|  |  |
| --- | --- |
| **문서번호** |  |
| **제정일자** |  |
| **개정일자** |  |
| **작성부서** |  |

**협력업체 윤리규범**

**주식회사 두올**

**목 차**

**1. 개요.............................................................................................................................................. 3**

가. 제정목적……………………............................................................................................................................... 3

나. 적용범위 ………………………………………………........................................................................................... 3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3

**2. 윤리규범…………........................................................................................................................ 4**

가. 윤리경영…………………………....................................................................................................................... 4

나. 안전보건경영………………………………….................................................................................................... 4

다. 환경경영…………………….............................................................................................................................. 4

라. 동반성장(준법통제).................................................................................................................................... 5

마. 협력회사의 윤리 준수.............................................................................................................................. 5

**1. 개요**

**가. 제정목적**

본 윤리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올은 각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여 더욱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범위**

두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어떠한 명칭

이든 직 · 간접으로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당사에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지칭)에 본 윤리

규범을 적용한다. 본 윤리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윤리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두올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서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

해야 합니다. 두올의 임직원은 사업유형 및 이행장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협력회사에 본 규범에 대한 자발적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당사의 사회적 책임 경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두올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윤리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 보완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윤리규범**

**가. 윤리경영**

1) 협력회사는 정신적 · 육체적 근로를 불문하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기타 모든 유형의 근로자 포함) 에게 관련 법령에 반하는 근로나 고역(苦役)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동료나 부하직원에게도 이를 위반 하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2)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인신매매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협력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4) 협력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5)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 하게 평가 · 보상하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적,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6) 협력회사는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기타 모든 유형의 근로계약자 포함)의 기본권을 존중

하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 · 절차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나. 안전보건경영**

1) 협력회사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위험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 ·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업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과 관련 정보를

사업장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다. 환경경영**

1) 협력회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인허가 및 등록절차 등 국내외 법령과 국제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한다..

2)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관리

하여야 하며, 온실가스배출 관리, 수자원관리, 대기오염 관리,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로 환경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저공해 대체재 사용, 친환경 자원활용 등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동반성장(준범통제)**

1) 협력회사는 자신의 경쟁회사와 입찰 · 가격담합, 경쟁회사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경쟁 질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동반자적 관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3) 협력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의 사용, 생산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협력회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되며, 수출제한, 경제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고객사의 현황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5) 협력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인원, 윤리,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고객사의 분쟁지역 광물의 원산지 확인을 포함한 공급망 내 분쟁 지역 광물 사용에 대한 자료 요청시 협조해야 한다.

**마. 협력회사의 윤리 준수**

1)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당사와 거래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또는 부당한 편익 등을 직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등 당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적극 협력한다.

2) 협력회사는 당사가 시행하는 윤리경영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4) 협력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 사회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